북한이탈주민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북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거주지로 전출할 때까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보호대상자의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에 따라 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무상제공 · 주택임대지원, 교육지원, 직업훈련 · 취업알선 · 취업보호,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등의 복지지원 및 법률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1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5
1.1. 북한이탈주민 보호 개관 5
1.1.1. 북한이탈주민 보호 개요 5
1.2. 북한이탈주민 보호 6
1.2.1. 북한이탈주민 보호절차 6
1.2.2. 보호기준 9
1.2.3. 이의신청 등 12
2. 남한사회로의 편입 14
2.1. 남한사회로의 편입 14
2.1.1. 사회적응 14
2.1.2. 가족관계등록 등 15
2.1.3. 이혼에 관한 특례 16
2.2. 정착금 등의 지급 17
2.2.1. 정착금 17
2.2.2. 가산금 20
2.2.3. 장려금 21
2.2.4. 보로금 22
3. 주거지원 24
3.1. 주거지원 24
3.1.1. 주택알선 24
3.1.2. 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 26
3.1.3. 거주지 신변보호 26
4. 취업지원 29
4.1. 취업지원 29
4.1.1. 취업지원 29
4.1.2. 취업보호 30
4.2. 자격인정 등 31
4.2.1. 자격 인정 31
4.2.2. 공무원 특별임용 32
4.2.3. 군인 특별임용 33
4.3. 영농 정착지원 33
4.3.1. 영농 정착지원 33
4.4. 생업 지원 33
4.4.1. 생업 및 창업 지원 33
5. 교육지원 35
5.1. 교육지원 35
5.1.1. 학비 등 교육지원 35
5.2. 학력인정 37
5.2.1. 학력인정 37
6. 사회보장 39
6.1. 기초생활보장 39
6.1.1. 기초생활보장 39
6.2. 의료보호 40
6.2.1. 의료급여 40
6.3. 국민연금 특례 43
6.3.1. 국민연금 특례 43
7. 그 밖의 지원 46

7.1. 법률지원 46
7.1.1. 법률구조 46
7.2. 적응지원 46
7.2.1. 전문상담 등 47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1.1. 북한이탈주민 보호 개관

1.1.1. 북한이탈주민 보호 개요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함)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 북한이탈주민과 유사한 용어
>
> ·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입니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는 탈북자, 새터민, 귀순자, 탈북동포 등도 있으나, 이 콘텐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북한이탈주민 보호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대상자"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북한이탈주민 보호의 기본원칙

▪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합니다.

▹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해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비용 부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1.2. 북한이탈주민 보호

1.2.1. 북한이탈주민 보호절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신청

보호신청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 이하 "재외공관장 등"이라 함)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보호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1.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2. 가족의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공관장 등의 보호신청사실 통보 등

▪ 위와 같은 보호신청을 하면 재외공관장 등은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1. 보호신청을 한 사람(이하 "보호신청자"라 함)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건강상태
2. 보호신청 일시 및 경위

▪ 보호신청을 한 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받기 전까지 보호신청자는 재외공관장 등에게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 위와 같은 보호신청에 따른 통보의 방법, 신변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보원장이 정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

국가정보원장의 임시보호 통보

▪ 재외공관장 등의 보호신청사실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하여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 등 임시보호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 위에 따른 국내에 입국한 보호신청자에 대한 일시적인 신변안전 조치와 조사의 기간은 해당 보호신청자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입국 후 보호신청한 경우에는 보호신청한 날)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국 인원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부차관이 위원장이 되어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통일부 조직입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항).

1.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2.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보호대상자의 수사의뢰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취업보호대상자의 취업보호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6. 보호대상자의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기간 및 신변보호기간의 연장·종료에 관한 사항
7. 보호대상자의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재실시 및 신변보호 재실시 기간의 연장·종료에 관한 사항
8.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시정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결정

보호 결정

▪ 통일부장관에게 임시 보호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결과가 통보되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가 결정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본문).

▪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리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보호 결정의 제외사유

▪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 다만,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 결정의 제외사유로 보지 않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에 준하는 사정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체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

-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경우 정치적·외교적으로 대한민국에 중대한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 임시 보호 기간 중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폭력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파손한 사람
-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획득한 사람
-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억류(抑留)·감금·은둔·도피 또는 강제혼인 등의 사정없이 정상적 또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보호 여부의 통지

▪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 여부가 결정되면 통일부장관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 등에게 통보하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처우내용의 고지

▪ 이러한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 등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가 결정된 경우에는 보호가 결정되었다는 사실과 그의 권리·의무 등 처우내용을 보호신청자에게 즉시 알리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보호신청자의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

국내 입국 교섭 및 이송 등

▪ 외교부장관은 외국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의 세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제2항).

1. 국내 입국을 위한 관련국 등과의 협의
2. 국내 입국을 위한 이송 지원
3. 그 밖에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위해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있는 보호신청자의 국내 입국을 위한 해당 주재국과의 교섭 및 그의 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보호신청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

이송 등 결정 통지

▪ 외교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외국에 있는 보호신청자의 이송 시기·방법 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 본문).

▹ 다만,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가 현존하고도 명백한 때에는 국내 입국 즉시 통보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 단서).

1.2.2. 보호기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지원기준

합리적인 지원

▪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기준은 나이, 성별, 세대 구성, 학력, 경력, 자활 능력, 건강 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개인 단위 지원 원칙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대를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1.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 및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부부를 포함) 및 직계혈족(직계혈족이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2. 형제자매

▪ 다만, 위의 세대를 구성하는 보호대상자 사이의 관계, 보호대상자의 재산 상태, 사회적응 상태 또는 보호결정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세대로 보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2항).

보호기간

▪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 이내이며, 거주지에서 보호받는 기간은 5년입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본문).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단서).

▪ 보호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 위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이하 “거주지보호기간”이라 함)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하려면 거주지보호기간 단축·연장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4제1항).

▪ 통일부장관은 거주지보호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거주지보호기간의 종료 시점, 거주지보호기간의 연장 요청 및 처리 절차 등을 보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4제2항).

▪ 거주지보호기간의 연장 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4제3항).

무연고청소년의 보호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 선정

▪ "무연고청소년"이란 보호대상자로서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만 24세 이하의 무연고 아동·청소년을 말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참조).

▪ 무연고청소년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호자로 선정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

▹ 무연고청소년이 소속되어 거주·생활하는 다음의 학교·기관·시설의 장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거주·생활시설을 제공하는 학교·기관으로 한정함)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이용 지원을 하는 공동생활시설

▹ 4. 무연고청소년이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된 위탁가정의 부모

▹ 5. 국내에 거주하는 무연고청소년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

▹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통일부장관은 보호자를 선정할 때에는 무연고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3항).

▹ 무연고청소년의 건강, 생활관계 및 재산상황

▹ 보호자의 직업과 경험

▹ 보호자와 무연고청소년 간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의 대표자가 보호자인 때에는 법인의 종류와 목적,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무연고청소년 사이의 이해관계 유무를 말함)

▹ 국내에 거주하는 친족의 유무

보호자 선정 취소 및 변경

▪ 무연고청소년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후견인 선임

▪ 무연고청소년은 통일부장관이 무연고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법」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받을 수도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 참조).

보호 결정 제외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보호 결정 제외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 결정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통일부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4항).

1.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2. 학력 인정
3. 자격 인정
4. 직업훈련
5. 영농 정착지원
6.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7. 이혼의 특례
8. 주거지원 등(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9.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10.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11. 사회적응교육

> ※ 보호 결정의 제외 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북한이탈주민 보호-북한이탈주민 보호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보호나 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

▪ 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이 중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1.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사망선고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企圖)한 경우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보호대상자가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특별임용된 경우

7. 보호대상자가 교수·연구원 등 전문직에 취업하거나 의사 등 전문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8. 보로금(報勞金)을 포함하여 보호대상자의 취득자산 규모가 3억원 이상인 경우

9. 보호대상자가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10.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11.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하였거나 받게 하려고 한 경우

12. 보호대상자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를 한 경우

1.2.3. 이의신청 등

보호신청이 거절된 경우 보호의 재신청

보호의 재신청

▪ 보호신청자 중 보호가 거부된 사람은 최초로 보호 여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사실관계 자료나 증거 자료가 있을 경우 다시 보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 위에 따라 재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신청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되어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단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이의신청 과정

▪ 보호대상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 이의신청을 한 보호대상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그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남한사회로의 편입

2.1. 남한사회로의 편입

2.1.1. 사회적응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교육

기본교육

▪ 보호대상자는 보호기간 중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 기본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성평등 관점에서의 통합교육(「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을 위한 교육

√ 초기 정착지원제도 안내를 위한 교육

지역적응교육

▪ 보호대상자는 기본교육 외에 거주지 인근의 지역적응센터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인 지역적응교육을 추가로 받게 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 지역적응교육은 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에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 지역적응교육은 거주지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각종 상담 및 보호대상자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

추가 사회적응교육

▪ 거주지 보호기간 중 보호대상자가 희망하거나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사회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

> ※ 지역적응센터
>
> 지역적응센터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 의료,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서 "하나센터"라고 하며, 구역별 하나센터의 연락처 등 자세한 정보는 남북하나재단(koreahana.or.kr), <고객지원-종합상담-하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와 정착에 필요한 지원

정착지원시설

▪ “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통일부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10조제1항 본문).

▹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에서 별도로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단서).

▹ 정착지원시설은 보호대상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적응활동을 위해 숙박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임시신분증명서의 발급

▪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는 임시신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보호금품의 지급

▪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는 생활에 필요한 보호금품을 개인별로 지급받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본문).

▹ 다만, 세대를 구성한 때에는 세대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

2.1.2. 가족관계등록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

가족관계등록 신청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함)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보호대상자

▹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

▪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신청서에는 정착지원시설의 보호대상자 등록대장 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허가여부 결정

▪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을 한 경우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지체 없이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를 한 때에는 해당 등록기준지의 시(구를 두지 않은 시를 말함, 이하 같음)·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등본을 송부하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통보

▪ 시·구·읍·면의 장이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등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되고,

주소지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 등록 신고사항을 통보하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신청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한 번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

2.1.3. 이혼에 관한 특례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 청구

이혼의 청구

▪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 이혼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3항).

재판상 이혼청구의 당사자

▪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된 사람은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2항).

공시송달

▪ 서울가정법원이 위의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에게 송달을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른 공시송달(公示送達)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4항).

> ※ 공시송달
>
> ·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①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②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③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95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54조제1항 참조).

> ※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혼』 콘텐츠의 <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절차-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정착금 등의 지급

2.2.1. 정착금

정착 여건이나 생계유지 능력 등에 따른 정착금의 지급

정착금 또는 정착금품

▪ 보호대상자는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에 따라 통일부로부터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착금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정착금의 종류 및 기본금의 지급기준

▪ 정착금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월최저임금액(이하 "월최저임금액"이라 함)의 20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기본금·가산금 및 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본문).

1. 기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월최저임금액의 10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2. 가산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 및 자녀양육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3. 장려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수료 여부, 자격취득 여부 및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 기본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 보호대상자로 결정될 당시 자산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기본금의 50% 이내
- 보호결정 등을 위한 조사 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기본금의 50% 이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기본금의 50% 이내
  - √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위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재외공관, 임시보호시설 또는 정착지원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금의 30% 이내
  - √ 재외공관, 임시보호시설 또는 정착지원시설에서 무단이탈하거나 고의로 물건이나 문서·서류 등 자료를 파손·훼손한 경우
  - √ 재외공관, 임시보호시설 또는 정착지원시설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 동일인에게 위의 구분에 따른 감액 사유가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사유마다 합산하여 감액됩니다. 다만, 감액 총액은 기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 보호대상자는 정착금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감액 금액, 근거 및 사유를 통지받고,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5항).

▪ 위에 따른 정착금의 구체적 지급기준·감액기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6항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

> ※ 정착금 감액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산금 및 장려금의 지급사유

▪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5.의 경우 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능)에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7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6조제1항).

1. 13세 미만(한부모가족만 해당)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병원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3.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5. 무연고청소년으로서 18세 이상인 경우

▪ 장려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7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본문).

1. 취업장려금: 거주지 보호기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본문. 이하 같음) 내에 취업한 보호대상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직하지 않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본문)에 이직하지 않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한 사실이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경우

2. 새출발장려금: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위 1.의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거나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보호대상자로서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취업하여 위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다만, 위의 취업장려금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출산한 경우에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출산 횟수별로 1년씩 연장한 기간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위의 취업장려금 지급사유를 판단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

정착금의 지급방법

▪ 정착금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할 때 기본금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지급받고, 그 나머지는 보호대상자가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1년 이내에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

▪ 보호대상자가 3개월 이상 취업·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제활동상태, 자산형성의 목적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의 적립금

▪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보호대상자는 정착자산 형성을 위한 적립과 관련된 사업을 위탁받은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의 소득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매월 적립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 및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19조제1항).

- 주택 구입비 또는 전월세 임대비 및 부대비용
-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또는 기술훈련비
- 사업의 창업자금 또는 운영자금
- 결혼비용, 의료비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
-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 상품 가입
-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용도

▪ 통일부장관은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에 따라 매월 적립하는 금액과 같은 금액을 매월 적립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

▪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제4항 본문).

▪ 다만, 통일부장관은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가 추가적인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1년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제4항 단서).

정착자산형성 지원금 지급

▪ 통일부장관은 지원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게 적립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제5항).

▪ 그러나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제6항).

- 지원기간이 만료된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권자인 경우
-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 본인의 소득이 아닌 금액으로 적립을 한 경우
- 지급된 지원금을 주택 구입비 또는 임대비,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또는 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자금 또는 운영자금,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 대한 교육

▪ 통일부장관은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 동안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에게 채무 관리, 자산 관리, 신용 관리 및 재무 설계 등의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제7항).

2.2.2. 가산금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가산금의 지급

가산금의 지급사유

▪ 가산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5.의 경우 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능)에 지급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7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6조제1항).

1. 13세 미만(「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만 해당함)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병원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3.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5. 무연고청소년으로서 18세 이상인 경우

- 가산금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 및 자녀양육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가산금의 신청

▪ 위 가산금의 지급사유 1.에 해당하여 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가산금 지급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함)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8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별지 제6호서식).

▪ 위 가산금의 지급사유 2.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가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8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본문·제1항 및 별지 제6호의2서식).

1. 가산금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지급사유	첨부서류
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병원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복지카드 사본 등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무연고청소년으로서 18세 이상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다만, 지급사유 다. 또는 라.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단서)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함) 사본 1부

※ 가산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북하나재단(koreahana.or.kr), <주요사업-정착지원금-가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3. 장려금

직업훈련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장려금의 지급

장려금의 지급사유

▪ 장려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7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본문).

1. 취업장려금: 거주지 보호기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본문. 이하 같음) 내에 취업한 보호대상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직하지 않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본문)에 이직하지 않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한 사실이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경우

2. 새출발장려금: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위 1.의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거나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보호대상자로서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취업하여 위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다만, 위의 취업장려금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출산한 경우에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출산 횟수별로 1년씩 연장한 기간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위의 취업장려금 지급사유를 판단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

▪ 위의 취업장려금 또는 새출발장려금은 보호대상자가 이직하지 않고 계속하여 취업한 기간을 기준으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 본문).

▹ 이 경우 회사의 합병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등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 단서).

장려금의 신청

▪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위의 장려금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를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8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 전단 및 별지 제6호의3서식).

▪ 장려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 후단).

> ※ 장려금의 지급 한도,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4. 보로금

정보 및 장비의 활용가치에 따른 보로금의 지급

보로금의 지급기준

▪ 보호대상자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의 활용 가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보로금(報勞金)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3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1. 국가안전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 5억원 이하
2. 군함·전투폭격기: 5억원 이하
3. 전차·유도무기 및 그 밖의 비행기: 3억원 이하
4. 포·기관총·소총 등 무기류: 5천만원 이하
5. 재화: 시가 상당액

▪ 위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나 장비가 국가안보 및 통일 정책 수립·결정 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억원의 범위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보로금의 지급절차

▪ 보로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

3. 주거지원

3.1. 주거지원

3.1.1. 주택알선

주거지원

주거지원

▪ 보호대상자는 연령·세대구성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임대에 필요한 지원[알선 및 임대보증금의 지급에 필요한 지원(이하 "주거지원금"이라 함)을 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본문).

▪ 다만, 보호대상자 및 그 직계가족의 재산·사회적응 상태, 정착의지, 정착지원시설과 임시보호시설에서의 위반행위 및 제3국에서의 체류 기간 등에 따라 주거지원금 중 일부를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단서).

임대주택의 알선

▪ 하나원을 퇴소한 후 거주지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임대주택을 알선합니다[통일부(unikorea.go.kr), 주요사업-북한이탈주민(북향민) 정착지원-정착지원제도-주거지원제도 참조].

▹ 거주지역을 결정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지만, 주택 물량이 부족할 경우 차순위 지역으로 배정되기도 합니다.

▹ 알선받은 주택은 주거분실 방지를 위하여 2년 동안 통일부장관의 허가 없이 알선된 주택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원금의 지급

▪ 임대보증금 지급을 위해 1인 세대를 기준으로 1,600만원의 주거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통일부(unikorea.go.kr), 주요사업-북한이탈주민(북향민) 정착지원-정착지원제도-주거지원제도 참조].

▹ 임대보증금으로 지급되고 남은 잔여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이 지난 후에 지급됩니다.

국민주택 및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의 분양·임대

국민주택 및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의 분양·임대

▪ 보호대상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함)가 공급하는 주택 중 85㎡ 이하의 주택을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1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9호).

▹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10%를 초과하여 특별공급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단서).

▪ 주택의 분양·임대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주택 분양·임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5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5항 전단 및 별지 제5호서식).

※ 주택의 분양 및 임대를 신청하는 사람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5항 후단).

▪ 또한, 보호대상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대한 특례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북한이탈주민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시 1순위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마목).

▪ 북한이탈주민이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별표 3 제1호마목,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2조 본문 및 별표).

▹ 소득요건: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

▹ 자산요건

구 분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2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이며,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 4천2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이며,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2) 1)의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2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20%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 4천2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20%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2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 4천2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 지원받은 주거는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지원받은 주택의 양도 및 저당권 설정 금지

√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가 그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공동생활시설의 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지원

▪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주거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보호대상자는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3.1.2. 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의 주거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이용 지원

▪ 보호 결정 시에 24세 이하인 보호대상자(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사람만 해당, 이하 "무연고청소년"이라 함)는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무연고청소년에 대해 주거지원을 유예하고 공동생활시설을 알선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2항 본문).

▸ 다만, 무연고청소년의 연령, 생활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무연고청소년의 신청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2항 단서).

공동생활시설의 지원 내용

▪ 공동생활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3항 참조).

▸ 숙식제공

▸ 진학지도, 보충교육 및 직업훈련 안내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심신회복 지원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무연고청소년을 위한 공동생활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주요사업-초기정착생활안정지원-공동생활시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1.3. 거주지 신변보호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거주지보호

▪보호대상자는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3제1항).

- 공공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거주하는 임대주택에서 다른 주소지의 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지원
-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

신변보호

▪보호대상자는 거주지로 전입한 후 신변안전을 위해 통일부를 통해 국방부나 경찰청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통일부장관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신변보호기간을 정합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3항).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변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 본문).

- 위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소재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신변보호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 신변보호기간의 연장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다만, 통일부장관은 연장된 기간의 종료 전이라도 보호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변보호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 단서).

- 위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신변보호의 종료를 요청하려면 종료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6항).

▪신변보호기간 및 연장된 기간이 종료된 이후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변보호 재실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신변보호 재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5항).

- 위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신변보호의 재실시를 요청하려면 재실시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7항).
- 재실시 기간의 연장 및 종료는 원래의 실시 기간의 연장 및 종료 규정이 준용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8항).

거주지보호제도

▪ 보호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되어 있는 거주지보호담당관으로부터 주거알선 및 임대주택,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긴급의료 등 사회보장제도에의 편입과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 등과 같은 각종 행정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통일부(unikorea.go.kr), 주요사업-북한이탈주민(북향민) 정착지원-정착지원제도-주거지원제도 참조].

▪ 또한,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지정된 신변보호담당관으로부터 신변 위해로부터의 보호,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통일부(unikorea.go.kr), 주요사업-북한이탈주민(북향민) 정착지원-정착지원제도-주거지원제도 참조].

4. 취업지원

4.1. 취업지원

4.1.1. 취업지원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직업훈련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였던 사람(이하 “보호대상자 등”이라 함)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대상자의 직무능력 등에 따라 3개월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항).

▪ 직업훈련은 정착지원시설 내에서 받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을 포함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 직업훈련 시 각자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취업과 기능 및 경력 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직업지도를 받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참조).

-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의 실시
- 직종소개·근로조건·고용동향 등 직업정보의 제공
- 각종 기능자격 검정 안내 등
- 적정 직업훈련기관에의 알선 등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에 관한 지원
- 그 밖에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기본적인 적응에 관한 지원

직업훈련 신청

▪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 등은 직업훈련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하면 되며,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직업훈련수당을 받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취업 알선

취업 알선

▪ 보호대상자는 직업훈련 분야와 북한에서의 경력에 따라 통일부를 통해 취업을 알선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취업 알선 신청

▪ 취업을 알선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취업 알선 신청서에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 또는 자격증명서 사본, 그 밖에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전단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 취업을 알선 받으려는 보호대상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후단).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원금 지급

고용지원금의 지급신청

▪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해당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제4항 본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및 별지 제4호서식).

▸ 다만,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제4항 단서).

우선구매 등의 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춘 모범이 되는 사업주는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은 위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5제1항제3항).

1.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
2. 연간 5%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

▪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우선 구매 등 지원신청서에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5제2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4 및 별지 제4호의3서식).

4.1.2. 취업보호

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보호

취업보호

▪ 보호대상자는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 "최초로 취업한 날"이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 중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한 날을 말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날을 최초로 취업한 날로 봅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취업보호 기간의 연장

▪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1. 취업보호 기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2.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취업보호의 제한

취업보호의 제한

▪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취업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제2항).

1.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근무하지 않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2. 근무태만,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 취업보호가 제한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

1.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근무하지 않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6개월

2. 취업보호대상자가 근무태만,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1년

4.2. 자격인정 등

4.2.1. 자격 인정

북한 등에서 취득한 자격의 인정

자격 인정

▪ 보호대상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 실시

▪ 자격 인정 신청자는 자격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자격인정을 받기 위해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이하 “보수교육 등”이라 함)이 필요한 보호대상자가 통일부장관에게 보수교육 등을 요청하면 통일부장관은 자격 인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협의한 후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수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자격 인정의 신청

▪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자격인정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 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자격인정심사위원회에서 자격 인정 여부 및 자격인정을 위해 보수교육 등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검정과목의 면제

▪ 보호대상자가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북한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검정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과 같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제5호).

▹ 주무부장관이 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본문).

> ※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1의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 다만, 해당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단서).

면제 신청절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검정 과목을 면제받으려는 경우 검정 과목 면제신청서에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지 제8호서식).

4.2.2. 공무원 특별임용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으로 특별임용

공무원의 특별임용 대상자

▪ 북한에서의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공무원으로 채용되길 원하는 사람은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특별임용은 북한의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희망 분야의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에 한정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

구비서류

▪ 공무원 특별임용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특별임용 신청서에 자격증명서 사본, 그 밖에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전단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 공무원 특별임용을 신청하는 보호대상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후단).

우선 특별채용 및 시험 면제

▪ 공무원 특별임용을 신청한 보호대상자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특별채용에 부과되는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4항).

4.2.3. 군인 특별임용

북한이탈주민을 국군으로 편입

군인의 특별임용 대상자

▪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 북한의 군인이었던 자의 특별 임용은 「군인사법」에 따릅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장교의 임용

▪ 북한의 장교였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고 그 자격을 갖추었으면 장교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11조제1항제8호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11조).

임용 방법

▪ 귀순한 장교의 전형은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조).

4.3. 영농 정착지원

4.3.1. 영농 정착지원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

영농 정착지원

▪ 영농(營農)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영농 교육훈련, 농업현장 실습 및 영농자금 지원 등 영농 정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

농업인후계자 선정

▪ 영농 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 실습을 마친 보호대상자 중 영농의지가 확고한 사람은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4제3항).

4.4. 생업 지원

4.4.1. 생업 및 창업 지원

생업지원

우선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이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우선지원 대상

▪ 공공기관에서 편의사업이나 편의시설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7).

1. 장애인
2. 부자(父子)가정 또는 모자(母子)가정
3.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생업지원의 신청

▪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 설치의 허가나 위탁(이하 "편의사업허가등"이라 함)을 신청한 보호대상자 중 통일부장관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생업 지원신청서에 편의사업허가등신청서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

▹ 이 경우 생업지원 우선지원 대상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7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후단).

창업지원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6).

▹ 창업교육
▹ 현장실습
▹ 창업상담
▹ 창업자금 지원
▹ 창업 사업 관련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 개선 지원
▹ 창업하여 생산·유통하는 제품의 판로 개척 지원

창업지원의 신청 등

▪ 창업 지원을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창업했거나 창업하려는 업종을 명시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

5. 교육지원

5.1. 교육지원

5.1.1. 학비 등 교육지원

교육지원

교육지원

▪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대한민국 국민인 자녀로 한정함. 이하 같음)는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출생지,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기준

▪ 국내의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학력 인정을 받아 각급 학교에 편입학하는 경우만 해당)한 북한이탈주민은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제45조).

1.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등을 면제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제외)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는 생활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2항).

2.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②「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③「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④「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국립·공립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만 입학금·수업료 등을 면제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3항).

   √ 사립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는 입학금·수업료 등이 반액(半額) 보조되며,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만점의 70% 미만이거나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영점인 경우에는 보조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이에 따른 지원은 해당 북한이탈주민이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의학·치의학·약학·수의학 및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5항).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기준

▪ 국내의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학력 인정을 받아 각급 학교에 편입학하는 경우만 해당)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제45조).

1.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함)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입학금·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제1항).

2.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국립·공립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만 입학금·수업료 등을 면제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제2항 및 제46조제3항).

√ 사립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는 입학금·수업료 등이 반액(半額) 보조되며,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만점의 70% 미만이거나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영점인 경우에는 보조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제2항 및 제46조제4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 이에 따른 지원은 해당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의학·치의학·약학·수의학 및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제2항 및 제46조제5항).

교육지원신청서 제출

▪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는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본문 및 별지 제9호서식).

1. 가족관계증명서(자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함) 1부

※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단서).

2.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에 관한 증명 서류(대학 등에 재학하고 있거나 진학 예정인 북한이탈주민만 해당함) 사본 1부

교육지원 결정 및 통보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이사장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항).

1. 교육지원 신청자가 교육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교육지원 신청자의 편입학, 휴학·복학 및 졸업·제적·자퇴 여부
3. 유급(留級)으로 재이수하거나 정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하는지 여부

▪ 교육지원 신청자는 교육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2항).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 교육지원 신청자가 위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을 대상자로 결정된 때에는 안내 등의 교육을 받고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제4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5.2. 학력인정

5.2.1. 학력인정

학력인정

학력인정

▪ 보호대상자는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에 대하여 교육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학력인정의 기준

▪ 초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인정

▹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2호 및 제98조의2제1항제1호).

▪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인정

▹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3호 및 제98조의2제1항제1호).

▪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인정

▹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3호 및 제98조의2제1항제1호).

▪ 전문대학을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인정

▹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맞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대학 2년을 수료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인정

▹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

학력인정의 신청

▪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본문).

▹ 다만, 보호대상자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에 따라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단서).

학력인정의 통지

▪ 보호대상자의 학력인정 여부가 결정되면 3개월 이내에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그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4항).

6. 사회보장

6.1. 기초생활보장

6.1.1. 기초생활보장

생활보호

보호대상자

▪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급여인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함)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5년의 범위에서 다음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2항은 제외),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제11조 및 「주거급여법」(제5조는 제외)에 따른 주거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 제12조의3(제2항은 제외)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제3항은 제외)에 따른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생활보호의 내용

▪ 보호대상자는 요건과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3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에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
-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
-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
- 해산급여: 조산(助産)이나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는 것
-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
- 자활급여: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등을 하는 것

▪ 수급권자 등이 급여를 신청할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신청한 사람이 급여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급여의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4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에게 급여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5항).

생활보호의 신청

▪ 위와 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급여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 전단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1.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2.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2. 의료보호

6.2.1. 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료급여

의료급여

▪ "의료급여"란?

▸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2026년 의료급여사업안내」 3쪽 참조].

▸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은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7호).

▪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호대상자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57쪽 참조).

▸ 동일 주민등록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와 동일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 주민등록표와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보장가구에 포함되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반영되는데,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등재되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민법」 제779조 참조).

▸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 가구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 자격 당사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 다른 법률에 따른 수급 자격 당사자의 30세 미만 미혼자녀

※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구에서 분리됩니다.

▹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 의료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65쪽 참조).

구분	보호센터 및 하나원 입소 중	하나원 퇴소 후
인적기준	수권자 본인	수권자 및 그 가족
소득재산기준	소득재산 기준 적용 제외	**▪ 중위소득의 50%(근로무능력가구의 경우 1명을 추가한 가구원수의 중위소득 50%) ※ 취업특례의 경우 160% ▪ 일반·금융·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국민기초생계급여와 동일)**

※ “보호센터”는 국정원 임시보호시설을, “하나원”은 통일부 정착지원시설을 말합니다.

▪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66~67쪽 참조).

▹ 보호센터 또는 하나원 입소 중 의료급여 자격 부여 및 관리

√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 입소 중에는 하나원이 소재한 보장기관에 타법 의료급여 자격부여를 요청하고, 보호센터에 입소 중에는 하나원을 통해 자격부여를 요청합니다.

√ 하나원으로부터 타법 의료급여 자격부여 요청을 받은 보장기관은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의료급여 자격취득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2023. 1. 1. 이후 신규 신청자(수권자)를 포함한 가구원 또는 일부 신규 전입 가구원에 대해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2종을 부여합니다.

√ 하나원 또는 보호센터 입소 중에는 소득재산 조회 절차를 생략합니다.

√ 하나원 관계자는 하나원에 입소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는 즉시 하나원이 소재한 보장기관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를 신청합니다.

√ 보장기관은 하나원이 신청한 명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로 타법 의료급여 급여자격을 부여하고, 기존 전산관리번호로 부여된 자격은 상실처리를 합니다.

▹ 하나원 퇴소시 처리 및 의료급여 신청

√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퇴소하는 경우 거주지 배정 명단을 첨부하여 보장 기관과 전입지 보장기관에 통보하고, 보장기관은 수급자 전출처리 절차에 따라 전입지 보장기관에 전출 통보를 합니다.

※ 하나원을 퇴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배정된 거주지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전입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전입 즉시 구비서류를 요청하고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확인 등 확인 조사를 실시한 후 보호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시 소득인정액 적용 기준

▪ 보호대상자가 의료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와 같은 기준에 따르며,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2026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68쪽 참조).

※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무료임차소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한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2026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68쪽 참조).

▪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 가구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2026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68쪽 참조).

▪ 기존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 수급자(보호기간 5년 이내) 중 근로·사업소득이 증가하여 아래의 소득인정액 상한을 초과함으로써 의료급여가 중지되는 가구는 취업특례가구 기준인 중위소득 160%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2026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68쪽 참조).

[´26년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상한]

(단위: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근로능력가구 (중위소득 50%)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근로무능력가구 (가구원+1 중위소득 50%)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4,757,575
취업특례가구 (중위소득 160%)	4,102,781	6,718,867	8,574,458	10,391,581	12,090,750	13,689,523

의료급여의 신청

▪ 보호대상자와 그 친족 등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등(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라고 함)이 보호대상자의 의료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에 신청자의 부양관계, 소득·재산상태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참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다만,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이용 편의,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의료급여가 제한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의료급여의 제한

▪ 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제15조제1항).

1.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2.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의료급여의 변경

▪ 보호대상자의 소득·재산상황·근로능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직권으로 또는 수급권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제16조제1항).

▪ 의료급여의 내용 등이 변경된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제16조제2항).

의료급여의 중지

▪ 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가 중지됩니다(「의료급여법」 제17조제1항).

1.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2.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가 속한 가구원 전부에 대해 의료급여가 중지됩니다(「의료급여법」 제17조제2항).

▪ 의료급여가 중지된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제17조제3항).

건강보험료의 지원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보험료(보험료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보험료를 말함)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

▹ 다만, 해당 연도의 가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인 사람은 제외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제1호 단서).

6.3. 국민연금 특례

6.3.1. 국민연금 특례

국민연금의 지급

국민연금의 지급

▪ 보호 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되는 사람: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사람: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국민연금액

▪ 국민연금의 금액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기본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마다 기본연금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해집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2항).

※ 기본연금액

· 기본연금액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29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마다 기본연금액에 5퍼센트를 곱한 금액이 더해집니다(「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

1. 다음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함, 이하 같음)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 다만, 다음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합니다.

가. 「국민연금법」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위의 2.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국민연금법」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위의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다. 「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위의 1.에 따라 산정한 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말함)를 기준으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다음의 사람에 대하여 규정된 각각의 금액을 말합니다(「국민연금법」 제52조제1항 전단 및 제52조의2).

1. 배우자: 연 15만원

2.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함): 연 10만원

3.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연 10만원

7. 그 밖의 지원

7.1. 법률지원

7.1.1. 법률구조

법률구조

법률구조

▪ 북한이탈주민 중 국내 거주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제11호 및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4호).

> ※ 법률구조
>
> ·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 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을 지원하여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참조).

법률구조 대상사건

▪ 법률구조 대상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참고).

- 민사·가사사건
- 형사사건
- 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사건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 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 신청

▪ 법률구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와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고,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상담을 마친 경우 공단 소정의 법률구조신청서와 위의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참고).

> ※ 법률구조를 신청할 때에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와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대상 유형별 보기-신분(자격)에 따른 대상자-북한이탈주민>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7.2. 적응지원

7.2.1. 전문상담 등

전문상담사의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전문상담사

▪ 통일부는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

▪ 전문상담사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되며, 이후 지역적응센터 등에 배치되어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전문상담사의 역할

▪ 전문상담사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점과 어려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취업, 의료,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종합 상담서비스 제공합니다[남북하나재단(koreahana.or.kr), 고객지원-종합상담-하나센터 참조].

▪ 전문상담사는 전국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거주지 편입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빠른 지역사회 안착을 도와줍니다[남북하나재단(koreahana.or.kr), 고객지원-종합상담-하나센터 참조].

전문상담요청

▪ 전문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가까운 전문상담사를 찾거나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남북하나재단(koreahana.or.kr), 고객지원-종합상담-하나센터 참조].

보호담당관의 적응지원

거주지보호담당관

▪ 거주지보호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되어 거주지 편입과정에서부터 주민등록, 생계급여 지급, 의료급여 대상자 지정 등 사회보장제도의 편입과 증명서 발급과 같은 각종 행정지원 업무를 지원해 줍니다[통일부(unikorea.go.kr), 주요사업-북한이탈주민(북향민) 정착지원-정착지원제도-주거지원제도 참조].

> ※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주거지원-주거지원-거주지 신변보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보호담당관

▪ 취업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진로지도를 지원하고 직업훈련기관을 알선하는 한편 이들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장을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통일부(unikorea.go.kr), 주요사업-북한이탈주민정책-정착지원제도-취업지원제도 참조].

> ※ 취업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취업지원-취업지원-취업보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담당관

▪ 신변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지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을 보호하고 관련 상담업무를지원해 줍니다[통일부(unikorea.go.kr), 주요사업-북한이탈주민정책-정착지원제도-거주지보호제도 참조].